

강의료규정

1997.03.01. 제정	1998.03.01. 일부개정	1998.08.24. 일부개정	1999.03.01. 일부개정
1999.08.23. 일부개정	2004.03.01. 일부개정	2006.03.01. 일부개정	2012.09.26. 일부개정
2013.05.23. 일부개정	2015.09.30. 일부개정	2018.05.24. 일부개정	2018.07.01. 일부개정
2018.12.12. 일부개정	2019.08.01. 일부개정	2022.04.27. 일부개정	<u>2025.12.10. 일부개정</u>

<학사관리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

제2조(강의의 구분과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강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3.1., 2012.9.26., 2013.5.23., 2019.8.1.)

1. ‘특수강의’라 함은 실험, 실습,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범을 말한다.
2. ‘보통강의’라 함은 특수강의를 제외한 정규 수업을 말한다.
3. ‘특별강의’라 함은 정규수업 이외에 본 대학교 교수, 외부교수, 국내외의 저명인사, 기타 해당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수업을 말한다.
4. ‘초과강의’라 함은 책임학점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5. ‘시간강의’라 함은 겸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의를 말한다.

제2조의2(강의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강의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2019.08.01., 2022.4.27.)

1. ‘초과강의료’라 함은 책임학점을 초과하여 강의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2. ‘시간강의료’라 함은 겸임교수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3. ‘대단위강의료’라 함은 수강인원이 일정인원 이상인 강좌에 대하여 수강인원별로 강의료 지급배율을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4. ‘특별강의료’라 함은 특별한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강좌에 대해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신설 2015.9.30.)
5. ‘계절학기 강의료’라 함은 여름 및 겨울방학 중에 개설한 강의를 담당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5.23.]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강의료 지급) ① 본 대학교의 강의료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1., 2006. 3.1., 2012.9.26., 2013.5.23., 2015.9.30., 2018.7.1., 2018.12.12.,

2015.9.30., 2019.8.1., **2025.12.10.**)

1.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초과강의학점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보직자의 경우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별도로 정한 보직자 구분 중 ‘나’ 군 이상의 경우** 연간 18학점 초과 시에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2. 시간강의료는 겸임교수의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한다.
3. 제1항 제1호의 전임교원 중 외국인교원과, 기타 비전임교원 등에 대한 초과강의료는 임용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출산,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수업을 하지 못하여 다른 전임교원이 대강할 경우 그 대강한 학점의 강의료는 대강한 전임교원의 학점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5. 강의료는 수강인원(수강신청 변경기간의 종료일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가산된 시수는 강의료 지급시에만 적용한다.
 - 가. 수강인원 100명 이상 : 1.5배
 - 나. 수강인원 150명 이상 : 2배
 - 다. (삭제)
6. 명예교수의 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제2조의2 제2호의 시간강의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8.1.)
7.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초과강의료는 책임학점의 2배 이내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②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전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 중 겸임교수에게 담당할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5.23., 2019.8.1.)
 - ③ 삭제 (2018.12.12.)
 - ④ 계절학기 강의료는 교원의 구분없이 제7조 제5항의 강의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8.1., 2022.4.27.)

제6조(강의료의 계산) ① 강의료는 주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며 초과강의료의 경우에는 주단위의 학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6.3.1., 2012.9.26., 2015.9.30.)

- ② 매학기 학사일정에 의한 개강일의 요일을 기준으로 1주를 계산하여 4주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15.9.30.)
- ③ 주간 및 야간 초과학점 계산은 총학점에 대한 주간 및 야간 총학점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2.9.26., 2015.9.30.)
- ④ 삭제(2015.9.30.)
- ⑤ 보직교원의 **책임학점 적용 시기는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22조(교원의 주당 책임학점)에 따른다.** (신설 2012.9. 26., **개정 2025.12.10.**)
- ⑥ 다음 각 호의 교원의 초과학점 산출기간이 한 학기인 경우에는 연간책임학점의 2분의 1을 학기책임학점으로 계산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신설 2015.9.30., 개정2018.12.12.)
 1. 교원연구년제 전임교원
 2.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교원
 3. 2학기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
- ⑦ 초과강의료 산정기간은 당해연도 1학기과 2학기이며, 조교수(외국인) 및 초빙교수는 개인별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12.12.)

- 제7조(강의료지급 기준액)** ① 시간당 또는 학점당 강의료는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30.)
- ② 전항의 시간당이라 함은 50분 수업기준의 1교시를 말하며, 학점당이라 함은 초과강의료 계산시의 책임학점 1학점을 말한다. (개정 2015.9.30.)
- ③ (삭제 2006.3.1.)
- ④ 제2조의2의 3호 및 4호의 강의료 지급 기준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9. 30.)
- ⑤ 계절학기 강의료는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 개설 강좌별 등록금이 강의료 지급액 이하인 경우 해당 강좌의 강의료는 해당 강좌 등록금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2.4.27.)

- 제8조(강의료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기간
 2.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 제9조(강의료지급기일)** ① 강의료지급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27.)
1. 당월분 시간강의료는 다음달 5일에 지급
 2. 초과강의료는 연간 초과학점에 대하여 당해 학년도 2학기 수업 종료 후 익월 5일에 일괄 지급
 3. 특별강의료는 강의종료일 또는 이후에 지급
 4. 계절학기 강의료는 수업 종료 후 익월 5일에 지급
- ② 강의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27.)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정) 본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강의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8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6조 6항, 제9조 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